



학생생활상담센터 규정

[제목개정 2014.11. 1]

제정일	1989.11. 1
개정일	2023. 2. 1
개정차수	11차
담당부서	학생생활상담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4.11. 1)

제 2조 (명칭) 본 센터는 동서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 (개정 2014.11. 1)

제 3조 (설치목적) 센터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관련된 상담과 교육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4.11. 1, 2016. 9. 1)

제 4조 (조직 및 임원)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, 책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09. 2.13, 2014. 5. 1, 2014.11. 1)

② (삭제 2020. 5. 1)

③ (삭제 2020. 5. 1)

④ 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상담관련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으로 한다. (신설 2014. 5. 1, 개정 2020. 5. 1)

제 5조 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개인상담 · 집단상담

2.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해석

3. 각종 심리교육에 관한 업무

4. 성희롱 · 성폭력 상담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

5. 학내 자살 및 자해 예방활동

6. 대학생활 주기별 순차적 상담체계유지 개선 및 대학생활 적응검사 운영

7. 재학생 실태조사 및 분석

8. 학생생활과 관련된 연구보고서, 교내 상담직무 수행자(교수, 직원)을 위한 상담지침서 발간 및 배포

9. 상담시스템 운영총괄. 다만, 교수상담은 학사운영과, 취업상담은 DU일자리센터에서 분임하여 담당한다.

10. 지도교수가 상담한 후 의뢰하는 심층상담 (신설 2020.10. 1)

[전문개정 2020. 5. 1]

제 6조 (운영위원회 설치) 센터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4.11. 1)

제 7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 (개정 2009. 2.13, 2014.11. 1)

②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09. 2.13, 2014.11. 1)

제 8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(개정 2014.11. 1)

2. 센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(개정 2014.11. 1)
3. 학생상담활동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(신설 2016. 3. 1)
4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(개정 2014.11. 1)

제 9조 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개최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 (개정 2014.11. 1)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- ③ 진로 및 심리상담 부서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(신설 2016. 3. 1)

제10조 (상담센터 이용 및 정보관리) ①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상담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정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.

- ② 학생의 상담기록과 상담내용은 일체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. 단, 학생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학생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다. 비밀보장의 한계사항은 상담시작 전에 학생에게 공지해야 한다.
- ③ 상담과 관련된 제반기록(신청서, 상담기록, 심리검사기록, 상담녹음 파일 등)은 3년 동안 보관 후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23. 2. 1)

[본조신설 2020. 5. 1]

제11조 (예산 및 결산)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예산회계규정을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0. 5. 1]

제12조 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.

[본조신설 2020. 5. 1]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